

『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1월 18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5년 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1월 26일

제9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수 복

나. 제안이유

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중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관련법에 적합하게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체납된 사용료 가산금 “ 100분의 3”을 “ 100분의 5”로 조정
- 원인자부담금 증가산금 대상금액 “ 300천원”을 “ 100천원”으로 조정

라. 참고사항

- 하수도법 제38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본 조례안은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가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38조의 규정을 침해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적용코자 함이며,
- 주요내용으로는
 - 체납된 사용료의 가산금 “ 100분의 3”을 “ 100분의 5”로 조정
 - 원인자부담금 증가산금 대상금액 “ 300천원”을 “ 100천원”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,
당초의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일부내용이 상위법을 침해함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- 조례안의 내용이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,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